

협력회사 행동지침

사규번호	지침 2026-1
담당팀	원가관리팀
제정일자	2026.06.12
개정일자	-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‘고객의 미래가치 창조’를 위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회사의 최선의 노력 및 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함께 하는 협력회사와 함께 시대의 흐름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- ①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되며, 회사는 협력회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회사는 지속가능한 경영 원칙 및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회사와의 계약 해지 및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

제3조 (인권/노동)

① 자발적 근로

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,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근로시간 준수

협력회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. 특수상황 외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근로취약계층 보호

협력회사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며, 신분증,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한다.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.

④ 임금 및 복리후생

협력회사는 법규를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해야 하며, 급여내역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임금 외에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한다.

⑤ 인도적 대우

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,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및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한다.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, 육체적 강압 및 불합리한 제한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, 비인도적 대우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제재를 해야 한다.

⑥ 차별금지

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고용 및 승진, 보상, 연수 기회 등에서 국적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
제4조 (안전/보건)

① 산업안전

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.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,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,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
②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

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.

③ 산업위생과 보건관리

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,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④ 안전보건경영 도입

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안전보건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, 계획, 절차,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을 도입해야 한다.

제5조 (환경)

① 환경법규의 준수

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, 동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, 유지, 관리한다.

② 폐기물 절감 및 효율적 자원사용

협력회사는 생산·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, 원료대체, 원료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오염원을 저감하고 자원 및 물(상수, 우수등)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.

③ 환경오염 방지

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,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6조 (윤리/사회적 책임)

①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

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,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.

②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

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,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.

③ 개인정보보호

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, 이를 위한 물리적,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.

④ 협력업체와의 상생

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,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
⑤ 지역사회 공헌

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,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,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제7조 (경영시스템)

① 리스크 점검

협력회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.

② 규범 준수

협력회사는 이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시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,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·관리해야 하며,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교육 및 소통

협력회사는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지침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.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.

제8조 (부칙)

① 이 지침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